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5,436,171	15,463,085
일반회계	481,429,183	14,442,875
특별회계	34,006,988	1,020,210
공기업특별회계	7,702,607	231,078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7,702,607	231,078
기타특별회계	26,304,381	789,13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25,048	24,751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198,019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150,066	34,502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80,119	20,404
수질개선 특별회계	8,856,652	265,700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5,654,081	169,62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537,794	76,13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56,56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29,593천원으로 한다.